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규정

(주)키콕스파트너스

【조문별 찾아보기】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명칭 및 소재】	4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4
제2장 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위원회의 구성】	4
제5조 【의장】	4
제6조 【위원의 임기】	4
제7조 【위원의 신분】	5
제3장 위원회의 운영	5
제8조 【회의】	5
제4장 위원회의 의무	5
제9조 【심의·의결사항】	5
제10조 【의안수집 등】	5
제11조 【회의소집】	5
제12조 【회의불참 방지】	6
제13조 【의안토의 등】	6
제14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6
제15조 【의결 정족수】	7
제16조 【부결시의 조치】	7
제17조 【제3자의 범위】	7
제18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7
제5장 보칙	7
제19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7
제20조 【운영세칙】	8
제21조 【규정 외의 사항】	8

제6장 부칙	8
제1조 【시행일】	8
【별지 제1호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9
【별지 제2호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0
【별지 제3호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11
【별지 제4호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선대책 누계현황	12
【별지 제4호의2서식】 월별 안전·보건현황 보고서	12
【별지 제5호서식】 재해발생현황 및 대책 보고서	13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일	제·개정 사유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키콕스파트너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장소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 1층(신서동)
2. 명 칭 : (주)키콕스파트너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3명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공장장 또는 공장장 유고시 관리팀장이 직무대행)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사업주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1명

제5조 【의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 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의 의무

제9조 【심의·의결사항】 ①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수집 등】 ①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이 평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원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된 안전모 또는 완장 등을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소집】 ①제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불참 방지】 ①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 개최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안토의 등】 ①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정례조회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 정족수】 ①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 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 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부결시의 조치】 사업주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6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1. 8. 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장	
-----	--

사용자 위원(4인 이내)	
성명	부서(직책)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 위원(4인 이내)	
성명	부서(직책)
1.	
2.	
3.	
4.	
5.	
6.	
7.	
8.	
9.	
10.	

20 년도 0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대 리 인	사 업 장 명	
	소 속 부 서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 출 안 건		
내 용		비 고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20 년 0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위원으로서 권한 일체를 위임하며, 또한 위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 합니다.

20 . . .

위임자 : (서명 또는 날인)

관련 근거조항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별지서식 5]

재해발생현황 및 대책 보고(담당부서장)

단위공정	해당작업	성명	연령	재해발생 경위	대책수립

※ 산업재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단위공정별 담당부서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재해발생 경위 및 예방대책을 직접보고

연도별 산업재해통계분석표

월	당월 누적	근로자	연근로 시간수	재 해 건 수	근 로 손실일수	도수율	강도율
1							
2							
3							
4							
5							

※ 산업재해통계 분석은 단위공정별 부서장이 작성.보고

- 재해통계는 단위공정별 안전관리의 지표에 대해서 효과 분석

※ 도수율 =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수 ÷ 연근로자수 × 1,000,0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